

대구지방법원 2017. 1. 24 선고 2015가단109109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6. 12. 13.

판결 선고2017. 1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,987,581원 및 그 중 34,651,011원에 대하여 2015. 2. 10.부터 2015. 7. 25.까지는 연 12%의, 2015. 7. 26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B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3. 피고 A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류기인

별지